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20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임미애·어기구·정준호

이훈기 • 이용선 • 채현일

허성무・박지원・김 윤

조계원 · 정일영 · 박지혜

이재관 · 이재정 · 문대림

문금주 • 이병진 • 임호선

윤준병 · 김문수 · 권향엽

박해철 • 이원택 • 정진욱

최민희 · 정동영 의원

(2691)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이러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운영 되고,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 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 르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법무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음.이에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정 의합(안 제2조제4호 신설).
-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등은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 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 마.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0 조의4 신설).
- 바. 농어업경영체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 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 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의8 신설).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근무환경 개선"을 "근무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근무환경"을 "근무환경, 인권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실태를"을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현황 등 실태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사항

- 2.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정책의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 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5.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요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배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 관, 시·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된다.
-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배정심사위원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⑤ 배정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어업고용인력"을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3.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국 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구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 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계절근로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성 검사 및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계절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4(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근로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등에게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 된 적격자를 선정한 농어업경영체등에게는 지체 없이 근로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 계절근로 자 근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5(근로계약) ① 농어업경영체등이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②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0조의4에 따라 근로허가를 받은 농어업경영체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 ④ 제10조의7에 따라 재입국추천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업경영체등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6(계절근로기간 연장)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제10조의7(재입국추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서 제10조의6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농어업경영체등이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8(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

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농어업경영체등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9(근무처 변경)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1. 휴업, 폐업, 사용자 등의 고용허가의 취소
 - 2. 농어업경영체등의 근로조건 위반, 체불임금발생 또는 인권침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이 인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제

10조의3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 제10조의10(귀국에 필요한 조치) 농어업경영체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11(공공형 계절근로자업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 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 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 제2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로한다.

제7장(제25조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및 근로조건 조정에 개입한 자
 - 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의8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상해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의9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방해한 자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
	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
	라 국내에 있는 농업경영가
	구, 농업법인 및 조합 등 농
	<u> 엉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u>
	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
	<u>한다.</u>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	
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	
다.	_,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 핤
- 6. 7. (생략)
- ② ~ ⑧ (생 략)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저

- ① (생략)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4. (생 략)
-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여성 · 외국인 · 비정 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④ (생 략) <신 설>

5 <u>근무환경</u>
<u>개선, 인권침해 구제</u>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레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2
1. ~ 4. (현행과 같음)
5 <u>근무환경,</u>
인권보호
6
환경 및 인권보호 현황 등 실
<u> 태를</u>
③ • ④ (현해고 가으)

③·④ (연맹과 숱음)

제7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배 정심사위원회) 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 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 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 한 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

- 을 심의·의결한다.
- 1. 기본계획 중 외국인 계절근 로자와 관련된 사항
- 2.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3.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 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5.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 업장 지정 요건 및 선정에 관 한 사항
-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② 배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 ③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법무 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저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
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 기관의 장이 된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도의 운영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배정심사위원회에 외국
인 계절근로자 정책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베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
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④ (생 략)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 3.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 5. (현행 제3호와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2(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선 내국인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 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 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

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 구 직자 명부의 작성)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 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 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 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배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계절근로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적성 검사 및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

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 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계절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외국인 계절근로자 근 로허가)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농어업경영체등은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신 설>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근로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 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등에게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 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농 어업경영체등에게는 지체 없이 근로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 인 계절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

- <u>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u> 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가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5(근로계약) ① 농어업경 영체등이 제10조의4에 따라 선 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 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 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 ②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시·군·구의 장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0조의4에 따라 근로허가 를 받은 농어업경영체등과 외 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사자 간

<신 설>

- 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 ④ 제10조의7에 따라 재입국추 천으로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업경 영체등은 연장된 취업활동 기 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 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6(계절근로기간 연장) 제 10조의5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및 취 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 다.
- 제10조의7(재입국추천)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서 제10조의6에 따라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 에 농어업경영체등이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를 신청한 외국 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출국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근로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 활동에 대하여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로허가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8(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
 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신 탁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농어업경영체등의 보험료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어업인안 전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9(근무처 변경) ① 외국 인 계절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 로의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1. 휴업, 폐업, 사용자 등의 고 용허가의 취소
- 2. 농어업경영체등의 근로조건

<신 설>

위반, 체불임금발생 또는 인 권침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이 인정된 외국인 계절근로 자는 제10조의3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기절근로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10조의11(공공형 계절근로자업 장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 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 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신 <u>설></u>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 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신 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 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지 정기준 및 절차 및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외 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 2,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준용 한다.
-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 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의-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u>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및 근로조건 조
 정에 개입한 자
- 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의8에 따른 보증보험 이나 상해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의9에 따른 외국인 계

 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방해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u><신 설></u>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